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제2170호
- 발 의 자 : 이성희 의원 외 16명
- 발의일자 : 2017년 10월 24일
- 회부일자 : 2017년 10월 30일

2. 주문

-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성되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조건과 기대와 수단의 불일치로 인하여 직무의 불안정과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이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법으로 격상하여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건의함

3.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986년 19.4%에 불과하던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율’이 2013년 40%로 증가하고, 2017년에는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육활동 참여의 주된 이유로 건강유지 및 증진(52.2%),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9.0%)를 드는 것만 보아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열망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배치하여 동호인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지도자와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지도자의 보수격차가 전혀 없고, 근속연수가 길어져도 임금 인상율에 변동이 없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신체적 훈련과 제반지식을 쌓기 위해 장시간 교육을 받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근무여건에 관하여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낮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이직율이 높음(서울시 30%, 경기도 40%).

-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자격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에 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바, 하나의 법률에 구체적으로 통합·규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 나. 기 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5. 이송처

- 가. 국 회 : 의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나. 정 부 :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다. 기 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6.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과중한 업무, 불안한 고용, 저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법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생활체육지도자는 2000년부터 생활체육활성화 및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사회복지 장관 회의 시 어르신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생활체육전담 지도자 배치 및 체육대회 확대계획 논의를 계기로 2006년부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을 실시하여

서울시에는 서울시체육회 및 각 자치구에 총 32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의 대표적인 업무는 ▲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조사와 지도 및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및 행정관련 업무로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관내에서 개최되는 대회 및 행사로 인해 일주일 내내 근무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1> 생활체육지도자 연도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	2016
월 급여	2,024,000	2,024,000	2,024,000	2,034,000
-수 당	1,723,000	1,723,000	1,723,000	1,723,000
-여 비	-	-	-	-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301,000	301,000	301,000	311,000
증감율	10%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2013년부터 변동이 없었으며, 2017년 1월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구 표준 생계비 510만원 ~ 642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평균 급여 200만원 내외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근속수당 제도가 없어 신입 지도자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지도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사회초년생의 급여로는 적당한 수준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급여 수준으로, 연차에 따라 업무 숙련도, 업무량, 업무해결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급여 수준으로 인해 하급 직원과의 갈등 등 조직 내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표2> 생활체육지도자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회)

연도	전체			일반지도자			어르신전담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2013	286	96,356	2,299,261	164	52,455	1,355,512	122	43,901	943,749
2014	319	106,190	2,457,713	164	51,776	1,331,007	155	54,414	1,126,706
2015	319	133,850	3,191,053	164	65,712	1,627,088	155	68,138	1,563,965
2016	322	140,847	2,853,740	164	67,960	1,364,370	158	72,887	1,489,370

또한 표2에서와 같이 매년 지도자 수 증가와 더불어 참여자들을 지도하는 횟수 또한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체육단체 통합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일원화되고 이에 행정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행정업무 담당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나 임시방편으로 지도자를 행정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지도자들은 지도활동 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한체육회 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2조(채용계약)제1항제1호¹⁾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2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이나

1) 제12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7호2)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재계약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여 이직을 하는 근로자가 2014년 15.6%, 2015년 15.3%, 2016년 3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불안으로 인한 이직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업무 숙련도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의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건의안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는 조훈현 의원(2016.8.24.)이 발의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과 김부겸 의원(2016.12.5.)이 발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양성 및 배치근거 마련하고자 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건의안을
통해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

조훈현 의원 안	김부겸 의원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 수립을 통해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발의경과〉

법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체육인 복지법안	2001781	2016.8.24.	조훈현 의원 등 26인	2016.8.25.	2016.11.1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04	2016.12.5.	김부겸 의원 등 18인	2016.12.6.	2017.2.14.	